

「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복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보상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(안 제3조)
- 참전명예수당 5만원 인상 : 월 10만원 → 월 15만원(안 제4조제1호)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: 월 5만원(안 제4조제2호)
- 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근거 보완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<참전 명예수당>은 도내 기준으로 기존 하위권 수준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격상되고, <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>은 기존 미지급에서 도내 중위권 수준으로 상승함.
-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양 시킬 뿐만 아니라, 지급 중단 사유와 환수 근거 조항도 신설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